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액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 확대(안 제18조제2항)

2026년 3월 10일 발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재 부정수급 반환 명령 금액의 30퍼센트인 신고포상금 기준액을 반환명령 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의 최소지급액도 500만원 한도 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정액으로 상향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자 함.

나. 개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의 적용 시기 규정(부칙안 제2조)

개정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다음날인 2026년 3월 11일 이후 적용토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명령한”을 “명령한 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60일 이내에 국고로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국고로 환수하기로 산정된 모든”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로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국고로 환수하기로 산정된 모든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 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 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 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 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 ----- 명령한 금액,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60일 이 내에 국고로 환수가 완료되었거 나, 국고로 환수하기로 산정된 모든 ---. ----- ----- ----- ----- -----.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u>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u>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u>한도로 한다.</u>

③・④ (생략)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u>제2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로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국고로 환수하기로 산정된 모든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u>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 <u>으로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연 락 처	(044) 214 - 3372